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15)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u>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 ----- <u>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u> ----- ----- ----- ----- <u>.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 3. (현행과 같음)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현행	개정안
발생한 사고 ② ~ ④ (생략)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① 접근매체(OTP카드, 보안카드, 신용카드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산장애 등), 또는 ③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해킹 등)¹⁾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

1)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1)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3가지)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9조)와 2) 접근매체의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10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1) (제9조)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²⁾

○ 다만,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³⁾

○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융소비자인 피해자(원고)가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가 있었고, ②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해당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이에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피해자(원고)에서 금융회사 등(피고)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이며, 이러한 책임 발생의 요건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책임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행 「민법」 규정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 입증책임의 전환, 고의·과실의 추정 등과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입증책임의 경감 등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554쪽~555쪽)

3) 조용호, 「손해배상 관련 심사기준 정립을 위한 입법례분석」, 『법제』, 2008.12. 65쪽 참조

-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거나, 일방이 계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원고) 대신 가해자(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입증책임의 전환)하려는 것임.
- 우리 법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 대체로 특정 전문분야에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⁴⁾⁵⁾

<‘입증책임 전환’ 입법례>

구 분	조문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

4)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556-557쪽

5)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는 배상책임자가 법률상 부여된 명확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사례임. 이에 반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책임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구 분	조문 내용
	<u>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u>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u>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u>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u>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u>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전자금융 사고는 전산 장애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발생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이 가해자(배상책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위법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심각성,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무과실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현행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⁶⁾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는 모두 무과실책임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신분증 도용이나 착오송금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영 범위 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입증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해관계자인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자율적 분쟁조정 및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⁷⁾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게 입증책임까지 추가될 경우 과도한 법적 책임 및 업무 부담⁸⁾의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용자의 접근매체 관리 등 보안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다만, 개정안은 무과실책임 대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7) 2023년 10월 5일,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책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합의하여 마련한 일종의 자율규약임.

8) 착오송금 등의 경우까지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아님을 금융회사가 입증하게 됨으로써 민원 과다로 인한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입증책임

제4조(입증책임) ① 이용자가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적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대면 금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 발생에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그 외에, 인터넷기업협회는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관리·이용 및 전자자금이체 지시행위 등은 이용자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으로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⁹⁾, 이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

9) 피싱, 파밍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는 이용자의 행위(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 접속 등)가 원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전자금융사고는 이용자의 임의적인 도움이 없으면 해당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금융회사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